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95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 박성훈·이헌승·이종욱

김성원 • 안상훈 • 김기웅

김도읍 · 임이자 · 이상휘

박수영 · 조배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 없이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고 매출 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제75조제2항"을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자료제출) ① (생 략)	제75조(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 없이 국내에서 판
	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
	개하고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	<u>③</u>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u>제1항</u> 에 따라 관련	<u>제1항 및 제2항</u>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	
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국세청장, 납	제76조(과태료) ①

세	지	관	할 🤇	지방	국서	청정	}-	또:	는
납	세지] :	관할	세	무서	장은	<u>)</u>	다	<u> </u>
각	ই	의	어느	- हें	나나여	하	당	하	는
자	에게] 2	2천민	l 원	ोठं	l 의	과	태.	豆
를	· 부.	과	한다.						

- 1. (생 략)
- 2. <u>제75조제2항</u>에 따른 시정 명 령을 위반한 자
- ②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75조제3항</u>
② (현행과 같음)